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유산 및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제정, 2025. 2. 14. 시행)되었음.

이와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타법개정,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중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일원화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의 폐지(현행 제16조 삭제)

1) 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대통령령 제 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의견 청취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6조(건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의견 청취)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u> <u>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u> <u>2.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u> <u>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u>	<u><삭 제></u>

중인 사람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
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
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
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
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
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
로 재직 중인 사람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천연기념물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水系)에서 <u>하는 건설공사</u> 등의 행위 2. ~ 4. (생략)	제17조(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 -----. 1. ----- ----- ----- --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 -- 2.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연 락 처	(042) 481 - 4994